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87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문진석 · 정준호 · 박용갑
이연희 · 안태준 · 염태영
최혁진 · 박정현 · 천준호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

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보고의무 등”을 “보고의무 및 실적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를”을 “제17조제1항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5호 중 “보고내용의 확인”을 “보고내용의 확인, 사업실적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등록사업자의 <u>보고의무</u> 등) (생략)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7조(등록사업자의 <u>보고의무</u> 및 실적확인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 보종합관리체계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22조(시정조치) ① 시·도지사 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 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 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조치) ① ----- ----- ----- ----- ----- ----- -----.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u>제17조</u> 에 위반되는 행위	1. ----- ----- ----- -----, <u>제17조제1항</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u> 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u>제17조제1항</u> 을 ----- ----- ----- -----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u>보고내</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 ----- ----- -----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보고내용</u>
---	--

<u>용의 확인</u>	<u>의 확인, 사업실적의 확인 및</u> <u>확인서 발급</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